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720 발의연월일: 2024. 12. 19.

발 의 자:전진숙·박해철·민형배

박 정・이정문・윤후덕

김선민 • 이연희 • 박희승

김현정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 시 소득은 정률로 산정하고 있으나 재산은 재산보험료부과점수를 사용하는 등급제를 취하고 있음.

이러한 등급제는 낮은 등급에서 오히려 더 많은 보험료를 부담하는 등 역진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2단계에 걸친 부과체계 개편을 거치면서 정률로 개편된 소득보험료의 산정방식에 비해 형평성이 맞지않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역가입자의 재산에 대한 보험료를 산정하는 방법을 기존 등급제에서 정률제로 변경하여 지역가입자의 재산에 대한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5호, 제69조제5항제1호·제2호, 제72조, 제73조제3항, 제74조제2항·제3항 및 제96조의2제1항).

법률 제 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5호 중 "보험료율과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을 "소득보험료율과 재산보험료율"로 한다.

제69조제5항제1호 중 "보험료율"을 "소득보험료율"로 하고, 같은 항제2호 중 "재산보험료부과점수"를 "재산월액"으로, "재산보험료부과점수 수당 금액"을 "재산보험료율"로 한다.

제72조 제목 "(재산보험료부과점수)"를 "(재산월액)"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재산보험료부과점수는"을 "재산월 액은"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재산보험료부과점수"를 각각 "재산월액"으로 한다.

제73조제3항 중 "보험료율과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을 "소득보험료율과 재산보험료율"로 한다.

제74조제2항 중 "재산보험료부과점수를"을 "재산월액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재산보험료부과점수"를 "재산월액"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재산보험료부과점수를"을 "재산월액을"로 한다.

제96조의2제1항 중 "재산보험료부과점수"를 "재산월액"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제4조(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① (생 략)	① (현행과 같음)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제73조제3항에 따른 지역가	5
입자의 <u>보험료율과 재산보험</u>	소득보험료율
료부과점수당 금액	과 재산보험료율
5의2.・6. (생 략)	5의2.・6. (현행과 같음)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69조(보험료) ① ~ ④ (생	제69조(보험료) ① ~ ④ (현행
략)	과 같음)
⑤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	5
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	
라 산정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	
으로 한다. 이 경우 보험료액은	
세대 단위로 산정한다.	
1. 소득: 제71조제2항에 따라	1
산정한 지역가입자의 소득월	
액에 제73조제3항에 따른 <u>보</u>	<u>소</u> 득
<u>험료율</u> 을 곱하여 얻은 금액	<u> 보험료율</u>
2. 재산: 제72조에 따라 산정한	2
재산보험료부과점수에 제73조	<u>재산월액</u>
제3항에 따른 재산보험료부과	재산보험료
<u>점수당 금액</u> 을 곱하여 얻은	<u>율</u>

금액

⑥ (생략)

제72조(재산보험료부과점수) ①
제69조제5항제2호에 따른 재산
보험료부과점수는 지역가입자
의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
역가입자가 실제 거주를 목적
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
준 이하의 주택을 구입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출을 받고 그 사실을 공단에 통보하 는 경우에는 해당 대출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여 재산보험료부과점 수 산정 시 제외한다.

1. • 2. (생략)

- ② 제1항에 따라 <u>재산보험료부</u> <u>과점수</u>의 산정방법과 산정기준 을 정할 때 법령에 따라 재산 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다른 재산과 달리 정 할 수 있다.
- ③ 지역가입자는 제1항 단서에

⑥ (현행과 같음)
제72조(<u>재산월액</u>) ①
<u>재산월액은</u>
<u>제</u>
<u>산월액</u>
1 . 9 /처체코 가스)
1.·2. (현행과 같음) ② 재산월액의
<u>الروح</u> المراكة المرا
.
③

따라 공단에 통보할 때 「신용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 용정보, 「금융실명거래 및 비 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 2호에 따른 금융자산,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금융거래의 내용 에 대한 자료·정보 중 대출금 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료・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 라 한다)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1항 단서에 따른 재산 보험료부과점수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금융정보등을 공단에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 다는 서면을 함께 제출하여야 하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u>재</u> 산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방법 ·산정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3조(보험료율 등) ①·② (생략)
 - ③ 지역가입자의 <u>보험료율과</u> <u>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u> 금액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

재산월액
④ <u>재산</u>
<u> 월액</u>
세73조(보험료율 등) ①·② (현
행과 같음)
③ 소득보험료율
과 재산보험료율

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4조(보험료의 면제) ① (생

략)

- ② 지역가입자가 제54조제2호 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가입자가 속한 세 대의 보험료를 산정할 때 그 가입자의 제71조제2항에 따른 소득월액 및 제72조에 따른 <u>재</u> 산보험료부과점수를 제외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보험료의 면제나 제2항에 따라 보험료의 산정에서 제외되는 소득월액 및 재산보험료부과점수에 대하여는 제54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여정지 사유가 생긴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까지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달의 보험료를 면제하지 아니하거나 보험료의 산정에서소득월액 및 재산보험료부과점수를 제외하지 아니한다.

1. • 2. (생략)

세74조(보험료의	면제)	1	(현행
과 같음)			
②			
			- <u>재</u>
<u>산월액을</u>			
③			
الم الم الم الم			
<u>재산월액</u> -			
	재산월	액을	<u>.</u>
1.・2. (현행과	같음)		

제96조의2(금융정보등의 제공 등) ① 공단은 제72조제1항 단서에 따른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 부과점수 산정을 위하여 필요 한 경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제32조 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가입자가 제72조 제3항에 따라 제출한 동의 서 면을 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 에 의하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계2조 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 관 또는 금융회사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기관등"이라 한다) 의 장에게 금융정보등을 제공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96조의2(금융정보등의 제공 등) ----- <u>재산월액</u> -----② ~ ④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